

부대사업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 신·구조문 대비표(수정)

현 행	개 정 (안)	수 정(안)	비 고
<p>제7조(계약의 방법)①사장은 부대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.</p> <p>②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수 있다.</p> <p>③ 수익사업추진 시 총 사업규모, 사업기간, 수익규모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, 공정성 등을 확보할수 있도록 내·외부 전문가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p>1. “복합상가” 계약의 경우</p> <p>2. 제8조 “2단계 경쟁 등의 입찰”의 경우</p> <p>3. 제9조 “협상에 의한 계약”의 경우</p> <p>4. 제27조의 “사업기간”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</p>	<p>제7조(계약의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삭 제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계약의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신규 복합상가 개발의 경우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	<p>- 이사회 의결사항 중 기존 복합상가의 계약종료 후 일반적인 최고가로 개발하는 경우는 이사회 의 주요 정책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에서 제외</p> <p>- 신규 유희공간을 복합상가로 개발하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이사회 의결 유지</p>